

노인 인권 보호 지침

제 1조 (목적)

본 지침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생활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2조 (노인인권의 정의)

- ①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②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③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제 3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한 한다.

-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수 있는 권리
- ②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③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④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⑤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⑥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⑦ 정치적·문화적·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⑧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⑨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⑩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제 4조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
-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②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①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

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④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동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 6조 (노인학대의 유형)

- ① 신체적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② 정서적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③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④ 경제적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⑤ 방임(자기방임) : 보호자로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제 7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의 역할)

-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⑤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8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설의 역할)

-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 9조 (노인학대 신고의무)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제 10조 (노인학대 신고전화 홍보)

-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홍보 및 시설내부에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게시
- ② 1389번의 의미 : 빨리(8) 구해(9) 주세요

제 11조 (신고자의 권리)

- ① 신고자의 신분보장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1.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고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하지 않음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 2. 상담자는 상담의뢰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조 (노인학대 및 학대의심 사례 발견시 대응)

- ① 관계공무원 및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발견한 사실 신고 : 1577-1389
- ② 피해노인의 신변보호 및 응급조치, 가해자와 격리 등 안전조치
- ③ 학대사례조사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조사와 사례 판정
- ④ 관할 시군구에 학대사례조사 결과 보고
- ⑤ 시군구는 학대유발요인 제거 등 보호조치 계획의 지도감독
- ⑥ 시설장, 보호자, 학대사례조사위원회는 학대사례평가 및 종결

(별첨 1)

◇ (A+)시니어복지용구 노인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지침 ◇

구 분		내 용	
사 전 예 방	어르신·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학대 및 폭력 현황 모니터링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학대 및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회의에 회부	
	건의함(신고함) 배치	어르신, 가족, 직원 등의 건의 및 신고가 용이하며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층에 건의함 설치	
개 입	신고	어르신 학대 예방센터 신고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어르신보호전문기관 1577-1389
		기관 내 신고처	사무실, 전화(031-942-8887), 홈페이지, 건의함(신고함)
	증거 확보	목격자, 녹화된 영상, 신체상태, 현장, 증거물 통하여 정확한 정황을 파악	
	긴급 사례회의	회부된 사례에 대한 회의로 원장, 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	
	서비스계획 및 진행	긴급 사례회의를 담당 사회복지사가 계획서를 작성하고 진행	
	가족상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육하원칙)에 의하여 학대 및 폭력 상황과 기관의 진행사항과 계획방향을 알림	
	분리조치	가해자의 <u>접근금지</u> 또는 <u>근무지 변경</u> 을 통한 분리조치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일지 작성	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일지를 기록하며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	
	치료서비스	어르신학대 예방센터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전반을 제공 * 어르신보호전문기관 신고시 서비스 자동연계
		기 관	상담프로그램을 통한 일대일 대면 상담
	가해자조치	구분	정서적학대 및 방임
		해당 사안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어르신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자 - 어르신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어르신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자
		처리 방법	- 1차 경고 및 시달서 작성 - 동일한 사안 재발시 해고
사 후 관 리	사후평가	성폭력 및 폭행	
		- 어르신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자 - 어르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자 - 어르신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자	
사 후 관 리	사후평가	- 어르신보호전문기관 신고 - 가해자 해고, 치료비 부담	
		개입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연속하여 문제가 없을시 개입을 종료	

(별첨 2)

◇ 노인학대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 ◇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1.노인을 폭행한다. (밀치거나 발로차기, 때리기, 목조르기, 할퀴거나 꼬집기, 물어뜯기, 물건 집어 던지기 등) 2.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집안에 가두기, 방에 자물쇠 달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등) 3.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침대에 묶기, 손·발 묶기 등) 4.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로 위협, 기물파손 등) 5.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가스·전기 단절, 식사단절, 치료에 필요한 약물단절 등) 6.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 강제 복용, 투입 등) 7.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무시, 대화거부, 무관심 등) 2.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친구,친지와 연락방해,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방해 등) 3.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고함 및 욕하기, 자존심 상하게 하기, 비웃기 등) 4.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노인의 의사 무시, 집안 행사에서 제외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1.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2.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저귀 교체, 공개된 장소에서 목욕시키기, 음담패설로 혐오감 주기 등)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 1.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으로 사용한다. (노인의 임금, 연금 가로채기, 허락없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빌린돈 갚지 않기 등) 2.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동의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받고 부양의무 불이행 등) 3.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을 제한,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 등)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1.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자신이 의료처치 거부, 노인 스스로 의·식·주 행위를 거부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1.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 및 왕래 두절, 낯선 장소에 버림 등)